

여성 정치참여의 어제와 오늘 : 역사적 흐름 및 핵심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서헌주 (한국국제교류재단)



1. 들어가며

1987년 한국사회의 민주화 이후 본격화된 여성 정치참여 확대 운동은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정당비례대표제의 도입과 함께 지퍼식 공천제를 주요한 개정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하에서 지역구 10명과 비례대표 29명을 포함해서 총 39명(13.0%)의 여성의원(女議員)이 선출되면서 대단히 고무적인 상황을 맞이하였다. 여성의원 당선자가 제16대 총선보다 2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18대 총선에서 총 41명(13.7%)의 여성후보자가 의원으로 당선되어 소폭 증가하는데 머물렀다. 이들 여성의원 가운데 지역구 출신 여성의원은 14명으로 제17대 총선보다 4명이 증가한 반면 비례대표는 27명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200년 유엔개발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여성권한척도(Gender Empowerment Measures)는 61위로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의 26위에 비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¹⁾ 아울러, 세계경제포럼(WEF)이 발간한 『2010년 세계성격차보고

1) UNDP(2009), Human Development Report 2009, New York: Palgrave Macmillan.

서』에 따르면, 비록 한국의 성 격차(gender gap)는 0.634로 134개국 가운데 104위로 많이 개선되었으나 2006년부터 2009년 사이에 0.616(92위/115개국) → 0.641(97/128개국) → 0.615(108위/130개국) → 0.615(115위/134개국)로 하락하여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²⁾

이러한 일종의 정체 상황, 특히 제18대 총선 결과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여성계에 일정부분 실망감을 던져주었으며, 아울러 기존의 여성 운동의 범·제도 개혁이 한계에 부딪힌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았다. 이는 기존 여성운동의 노선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하여 일부 여성 관련 단체들은 일본의 가나가와네트워크 운동 등과 같은 성공적인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역 수준에서 생활정치운동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이 글은 한국에서 여성의 정치참여의 역사를 살펴 보면서 그 특징과 한계점을 살펴보고, 그 해결에 있어 중심과제로 지역 수준에서 상시적으로 전개되는 여성 정치네트워크의 구축과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여성 정치참여와 관련한 연구³⁾들이 관련 선거 범·제도 수준에서의 논의에 치중하고 있다는 한계점과 아울러 범·제도가 실질적인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특정시기 한시적인 여성 네트워크의 조직은 물론 지역적 차원의 생활정치 등을 매개로 한 상시적인 여성 정치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2. 여성 정치참여의 역사적 개관 및 특징

본 장은 역사적 관점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경험을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⁴⁾ 이를 위해 과거 전국적 단위에서 이루어진 국회의원 선거(이하 총선) 및 지방선거에서 여성의 정치참여를 선거결과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가운데 여성의 참여 증감현상의 배경 내지 요인에 대해서도 간단히 지적한 다음 여성 정치참여의 특징들을 언급하고자 한다.

한국에서 여성은 법적으로 남성과 동등한 참정권을 부여받은 이래 17번의 대통령선거와 18번의 총선 그리고 8번의 지방의회 선거에 참여했다. 그러나 최근 10년 사이 유의미한 10% 이상의 여성 국회의원을 선출시킨 17대 총선(2004년, 13.0%) 및 18대 총선(2008년,

13.7%) 그리고 역시 10% 이상의 여성 지방의원을 선출시킨 민선 4기 지방의원 선거(2006년, 13.7%) 및 민선 5기 지방선거(2010년, 19.1%)를 제외하면 한국 역사에서 여성의 정치참여는 극히 저조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⁵⁾ 그 결과 지금도 여성의 정치적 과소대표가 문제가 되고 있지만, 2000년대 이전까지 여성의 정치적 과소대표는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하겠다. 물론,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여성의 정치참여 비율인 10% 이상이 여성이 의회 내에서 여성의 이익과 관심을 대표하는 정책 어젠다를 설정하고 리더십을 구성할 수 있는 정도의 정치참여 비율을 의미하는지는 별도의 논의를 필요로 한다고 본다.⁶⁾

제1대 총선부터 제8대 총선까지 여성의 정치참여는 그 계산이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울 정도로 낮았다. 제1대 총선에서 본선거 과정에서 출마한 여성후보들 중 당선자는 없었으나, 이어 치러진 보궐선거를 통해 1명이 당선되어 전체 의원 중 여성의원이 0.5%를 차지하였다. 제2대 총선에서 여성의 정치참여는 남성 중심적 정치문화 및 정당문화 그리고 낮은 유권자 의식 등으로 낙후성을 면치 못했다. 그 결과 2명의 여성후보가 당선되어 전체 210석의 의석중 1.0%를 차지하였다. 아울러, 한국 선거사상 최초로 정당공천제가 실시된 1954년 제3대 총선에서 여성의원 1명이 당선되어 전체 의석 중 0.5%를 차지하였고, 1958년 제4대 총선에서는 5명의 지역구 여성후보가 출마하여 3명이 당선되어 전체 의원 233명 중 1.3%를 차지했다. 한편, 4.19 민주화 혁명 이후 제3차 내각책임제 개헌 이후 실시된 제5대 총선에서는 1518명의 민의원 후보자 가운데 8명의 여성후보가 출마해 1명만 선출되어 전체 국회의원 중 0.3%를 차지하는 극히 부진한 결과가 나왔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를 통해 장면 정권을 붕괴시킨 박정희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실시된 제6대 총선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된 전국구비례대표제를 배경으로 여성의원 후보 2명이 당선되어 전체 175명 중 1.1%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제7대 총선에서는 지역구에서 여성후보 1명이 당선되고 전국구 비례대표제에 의해 2명이 당선되어 여성의원이 전체 의원 175명 중 1.7%를 차지하였다. 1971년 실시된 제8대 총선을 통해 여성의원이 총 의원 204명 중 5명으로 2.5%를 차지하였으나 전국구 비례대표에서는 여성의원이 전체 51명중 5명으로 9.8%를 차지하였다.

한편, 유신체제 하에서 실시된 제9대 총선에서는 11명의 지역구 및 전국구비례대표 여성 후보들이 당선되어 전체 의석의 2.7%를 차지하였다. 혹자는 이러한 여성의원의 수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유신정권하에서 기형적인 의회구조 속에서 정권의 거수기 역할에

2) World Economic Forum(2010),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0, Geneva: World Economic Forum.

3) 엄태석(2009), "충남 여성 정치참여 제약요인의 해결방안과 정치참여 의식제고." 충남여성포럼 발표논문. 조현옥(2009), "여성의 참여확대를 위한 2010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개원 10주년 기념 학술회의 발표논문, 엄길인(2007), "지방자치시대의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문숙(2008), "프로스의 여성정치참여: <동수법>의 효과인가?" 『한국프랑스학논집』 제61집, 479-510쪽 등.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89), 『대한민국정당사』 제1집(1945-1972) 서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00),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총람』(서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헌정회(1992), 『대한민국지방의회총람』(서울: 대한민국헌정회), 김원홍·김혜영·김은경(2001), 『해방후 한국여성의 정치참여 현황과 향후 과제』(서울: 한국여성개발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 등을 참조.

5) 한 연구에 따르면, 제헌의회에서부터 16대 총선까지 지역선거구를 통한 여성의 국회 진출 사례는 역대 총 정원 의원 수 3,805명 중 26건에 불과해 2.2%라는 비율을 차지한다. 김원홍·김혜영·김은경(2001), 『해방후 한국여성의 정치참여 현황과 향후과제』(서울: 한국여성개발원), 45쪽.

6) 통상 'Critical mass'로 설정하는 것이 30%인데, 동 개념 및 논쟁에 대해서는 Sandra Grey(2001), "Does Size Matter? Critical Mass and Women MPs in New Zealand House of Representative", Paper for the 51st Political Studies Association Conference 10-12 April 2001, Manchester, United Kingdom을 참조할 것.

동원되었다는 점을 들어 그 의미를 평가절하 한다.⁷⁾ 이는 박정희 정권이 상징적인 의미에서 일방적으로 위로부터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문제를 부각시킨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박정희 유신체제 말기인 1978년 12월에 실시된 제10대 총선은 야당인 신민당이 32.8%를 득표해 여당인 민주공화당을 누른 선거로 총 8명이 여성 국회의원이 되었는데, 지역구의원 총 154명 중 1명만 여성의원이었던 반면 나머지는 7명은 유정회로 선출되었다.

박정희 대통령 서거와 전두환 등의 신군부세력에 의한 12.12 군사쿠데타 및 5.18 광주민중항쟁 등의 정치적 대변혁과 의회정치의 단절을 겪은 이후 군사정권 하에서 실시된 제11대 총선에서는 정치권에 ‘새로운 술’을 찾겠다는 명분에서 전국구비례대표에 여성의원이 대거 발탁되어 지역구 1명과 전국구 8명 등 총 9명(3.3%)이 의정활동을 하였다. 한편, 신한민주당의 돌풍과 제1야당 등장한 제12대 총선에서 여성은 지역구에 7명이 출마하여 2명이 선출되었으며 전국구후보로 6명이 당선되어 총 8명(2.95%)이 원내 입성에 성공하였다. 제12대 총선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지역구에서 여성후보자 2명이 당선되었다는 점이며, 이는 중선거구제, 즉 한 선거구에서 2명을 당선시키는 선거제도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그러나 1987년 6월 민주화항쟁과 12월 대통령선거를 거치고 여·야간 합의를 통해 소선거구 최다득표제와 전국구 비례대표제(1/3) 선출을 핵심 내용으로 한 개정 선거법 하에서 치러진 1988년 4월 총선 결과 지역구에서 여성 후보 당선자는 없었던 반면 전국구로 6명이 선출되어 전체 의원의 2.0%를 차지했다. 아울러, 제14대 총선에서도 지역구 당선 여성후보자는 1명도 없었고 전국구에서 7명이 활동하였다. 단지 보궐선거에서 1명의 여성후보가 당선되었는바 14대 국회에서 여성의원은 지역구 1명 및 전국구 7명을 포함해 총 8인(2.7%)이었다. 한편, 1996년 4월에 실시된 제15대 총선에서는 지역구에서 21명의 여성후보가 출마하여 2명이 당선되고 전국구를 포함해서 총 9명(3.0%)이 당선되었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바로 여성 후보 2명의 지역구를 통한 당선이었다. 이는 제12대 총선에서 중선거구제에 힘입어 지역구를 기반으로 한 여성의 국회의원 진출이후 소선거구제로 개정된 선거제도가



적용된 제13대와 제14대 총선에서 연속적으로 지역구를 통한 당선에 실패해 한 동안 실의에 빠져있던 여성계에 여성의 지역구를 통한 정치진출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아울러, 보궐선거에도 여성후보가 당선되어 원내에 진출하였다. 그 결과 15대 국회에서 여성의원은 지역구 3명과 전국구 9명으로 총 12명이 활동하였다.

2000년 4월에 실시된 제16대 총선부터 여성의 국

회 진출은 그 양상이 크게 바뀌기 시작하였다. 여성의 정치참여와 관련해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바로 정당법 개정을 통해 정당이 선출직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공천에서 전국구 비례대표의 경우 30%를 여성으로 공천할 것을 의무화한 점이였다. 이러한 법 개정엔 힘입어 전국구 의석 중 여성이 11명이 당선되었다. 아울러 지역구를 통한 여성 후보자의 원내 진출도 증가되어 제15대 총선의 그것에 비해 2배가량 증가하여 5명으로 총 16명(5.9%)이 제16대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여성계를 상당히 고무시키는 선거결과를 낳았던 2004년 제17대 총선은 정당비례대표제의 도입과 함께 지퍼식 공천제를 주요한 개정사항으로 하는 선거법 하에서 치러졌다.⁸⁾ 그 결과, 여성 국회의원의 수는 지역구 10명 및 비례대표 29명을 포함해서 총 39명(13.0%)이었다. 동 수치를 제16대 총선 결과와 비교해보면 여성 의원의 비율이 2배 이상 크게 증가한 것이다. 제18대 총선에서도 여성의 정치참여는 다소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여 총 41명(13.7%)이 당선되었다. 이들 가운데 지역구를 통해 당선된 여성의원은 14명으로 제17대 총선의 10명보다 4명이 증가하였으며 비례대표는 27명이였다.

다음으로, 전국 지방의회 선거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변화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자. 지난 20년의 지방선거 역사에서 여성의 정치참여는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물론 이는 한국 사회 민주화 이후 여성의 정치참여운동과 여성권익신장운동의 확대는 물론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여성정치참여 확대 및 역량강화에 힘입었다고 볼 수 있겠다. 예컨대, 1991년 지방자치가 재개되어 실시된 최초 선거에서 여성은 광역의회 8명 및 기초의원 40명으로 총 48명이 당선되어 총 당선자 5,161명 중 1%에도 미치지 못한 0.9%의 저조한 당선 비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광역의원 10% 비례대표제를 통해 본격적으로 지방의회 진출을 하였던 1995년 민선 1기 지방선거부터 2010년 민선5기 지방선거에 이르기까지 여성당선자의 수는 128명에서 745명으로 증가하고 당선 비율도 2.2%에서 19.1%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15년의 그것보다 9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5년 민선 1기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광역의원 선거에 10%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으며, 각 정당이 여성표심 공략을 위해 여성후보자를 다수 공천한 결과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에서 각각 56명, 72명 등이 당선되어 총 5,756명 중 128명(2.2%)이 지방의정활동을 하였다. 1998년 민선2기에서 여성계가 “여성정치 도약의 해”로 선포하고 여성의 정치참여에 의욕적으로 나섰으나 비례대표 의석수를 축소하는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오히려 감소(총 4,450명 중 97명 당선)하였다.

이와 같은 민선 2기의 선거결과는 2002년 민선 3기 지방선거를 통해 다시금 반전되었다. 즉, 지방선거에서 여성당선자 비율이 다시금 증가하였다. 예컨대, 광역의회 63명(지역구

7) 김연진(2008), “여성정치인의 의회진출을 통한 대의성의 구성과 정치변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0쪽.

8) 구체적으로 비례대표 비율의 확대 및 비례대표 50% 이상의 여성으로 공천하되 명부순위 2인마다 여성 1인 포함되도록 하였다.

14, 비례대표 49명) 및 기초의회 77명으로 총 142명의 여성후보자가 당선되었다. 이는 2000년 2월 개정된 정당법 즉, 국회 및 지방의회선거 비례대표 30% 이상 여성공천 할당제 의무화와 2002년 개정된 정치관련법(지방의회 선거 비례대표에 여성공천 50% 이상 할당) 개정에 크게 힘입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하겠다.⁹⁾ 더 나아가, 2006년 민선 4기 지방선거에서도 2005년 8월 제정 및 일부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중선거제, 비례대표제 확대, 유급제, 예비후보제 도입¹⁰⁾ 등에 힘입어 광역의회 89명(지역구 32명, 비례

대표 57명) 및 기초의회 437명(지역구 110명, 비례대표 327명)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 3명을 포함해서 총 529명으로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여성 정치가들이 지역구에서 2선과 3선 등에 성공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고무될 만한 일이라고 하겠다.

총 당선자중 13.7%를 여성이 차지하였다. 한편, 지난해 실시된 민선 5기 지방선거는 3월 2일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 의무공천 조항을 신설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배경으로 치러졌으며, 그 결과 광역의회 113명(지역 55명, 비례대표 58명) 및 기초의회 626명(지역 274명, 비례대표 352명) 등 총 739명의 여성이 지방의회에 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상에서 우리는 역사적 관점에서 총선 및 지방선거에서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이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의 역사 속에서 발견되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지난 기간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정치참여가 다소 기복이 있기 하였지만 전체적 여성 의원의 수적 증가를 통해 확대되어왔다. 그렇지만 여성이 정치적으로 과소대표되고 있다는 본질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는 없다는 점을 확인하게 된다. 이는 향후에도 여성의 정치참여가 우리 사회에서 해결되어야 중요과제라는 점을 시사해준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많은 난관들이 놓여 있다. 산업화/정보화에 남아있는 고정된 성역할(gender role) 관념의 지속과 남성우위의 정치구조와 정치문화 및 사회·문화적 요인 그리고 경제적인 요인(예컨대, 정치자금 동원력)과 사회적 자원 및 정치적 역량의 결핍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다수의 장애들의 우회적인 해결방안으로서 여성할당제(gender quotas)를 그 중요한 전략 중 하나라고 제안한다.

둘째, 총선이든 지방선거이든 관계없이 여성 정치참여의 주된 진입로로 작용한 것이 비례대표제 및 여성할당제였다는 점이 나타난다. 역으로,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이 한 정당의 지역구 후보로 출마하고 당선되어 의원 경력을 지속하는 경우는 과거에는 물론

현재에도 그리 흔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비례대표=여성”이라는 등식을 만들어내기도 하였고 여성 정치참여의 한계점을 분명하게 지적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난 몇 차례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출신 여성후보가 당선되는 사례가 다소 늘어나고 있다는 점과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여성 정치가들이 지역구에서 2선과 3선 등에 성공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고무될 만한 일이라고 하겠다.

셋째, 두 번째 지적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전국적 수준이든 지역적 수준이든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있어서 선거법 등의 법·제도적 변화가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 수준에서이든 전국적 수준에서 여성의 정치참여의 확대과정은 비례대표제도 도입과 일정 비율 이상의 여성공천할당 의무제 도입 등과 함께 이루어졌다.

이는 여성계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중요한 전략의 하나로 선거법 및 선거제도의 변화를 상정하여 투쟁을 전개한 것과 대체로 궤를 같이 한다. 즉,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개방된 정치적 공간 속에서 여성운동 진영은 줄곧 내생적인 정치참여운동과 여성권익운동의 확대 및 사회·경제 영역에서의 여성의 참여를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은 글로벌 수준에서 전개된 다양한 영역 및 수준의 여성 정치참여와 역량강화 노력¹¹⁾과 맞물려 국내 정책담당자에게 국내외의 동시적 압박이라는 효과를 가져왔고 그 결과는 한편으로 선거법 등의 개정이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 관련 선진법·제도¹²⁾의 도입이라고 하겠다.

3. 여성 정치참여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여성 정치네트워크 구축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정치참여는 민주화 이후 지속적인 여성운동과 글로벌 차원의 요인들이 선순환적으로 상호 결합하여 점진적인 확대의 길을 모색해왔다. 특히, 1990년 중반 여성계에서 제기되어 2000년대에 본격화되어 현실화되었고 이후 여성운동의 거둔 핵심적인 성과 가운데 하나로 간주되는 비례대표 여성 50% 할당제 법제화를 계기로 총선은 물론 지방의회 선거에서도 여성의 정치참여는 양적인 측면에서 도약을 이루었다. 아울러, 여성의

11) 1995년 북경세계여성대회에서의 북경행동강령(Beijing Platform for Action) 채택,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의 확산, 유엔천년발전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에서 여성정치참여 및 역량강화 요구 등이 그 예로 지적될 수 있다.

12) 주요한 것을 지적한 다음과 같다. 여성발전기본계획(1985년), 남녀고용평등법(1987년), 영·유아복지법(1991년), 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1994년), 여성발전기본법(1995), 남녀차별금지구제법(1999년), 성매매방지법(2004년), 성인지예산제도(2006년),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2007년) 등.

정치참여 확대가 정치적 태도와 의정활동 역할 그리고 정책우선순위와 선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여성친화적인 정책을 만들 수 있고 동시에 여성의원이 여성 관련 의제를 실질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변화도 일정부분 이루어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¹³⁾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정치참여가 과거 정치권에서 배제된 여성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여성주의 정치실현을 위하여 확보한 여성 할당 의석이 중앙이건 지역이건 전문성과 자질을 결여한 여성들로 채워지고 있다는 일부의 비판적인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정치의 지속적인 문제인 여성의 정치적 과소대표성의 완화 및 정치참여주체의 다양화 그리고 정책 합리성의 확보 및 정치사회적 학습 기능 등의 측면¹⁴⁾에서 여성의 지속적인 정치참여 확대는 필요하다고 하겠다.

앞서도 지적하였지만,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서 여성운동계는 그 동안 운동의 중심점을 국가적인 수준에서 영향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 관련 법·제도의 개혁에 두어 전개해 왔고, 여성 공천 50%할당제 도입 등과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노력이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다. 아울러, 국가적 차원의 선거 관련 법·제도의 개혁을 통해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는데에는 일정부분 한계점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여성계와 학계에서 정당 수준에서의 개혁에 관한 논의도 적극적으로 개진되고 있다.¹⁵⁾ 정당 후보자의 공천에 있어서의 절차 및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신뢰성 강화, 전공분야별 전략적 공천 신청제 도입 그리고 합리적인 여성 비례대표 공천 기준 마련 및 적용 등이 그 예라고 하겠다.¹⁶⁾

그러나 국가적 수준과 정당 수준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관한 논의의 주된 초점이 주로 법·제도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아무리 선진적인 좋은 법·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 속에서 전문적 자질을 갖춘 여성 정치 인적 자원이 부족하고 또한 이들이 남성 우위의 가부장적 사회·문화의 구조적 굴레 속에 갇혀 있고 정치자금 등 경제적 자원 동원 등에서 남성에 비해 구조적 약점을 가지고 있다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제17대 총선에서 당선된 여성의원의 수는 제16대 총선의 5.9%에서 13.0%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제18대 총선에서 여성의원의 수는 2명(0.9%)으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제18대 총선에서 여성의 정치참여가 제17대 총선보다 다소 진전을 이룬 것도 사실이지만 여

전히 총 41명의 여성의원 중 비례대표가 주류를 형성하는 반면 지역구는 제17대 총선에서의 10명보다 4명 증가한 14명에 불과하다는 점은 우려를 자아내는 대목이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 진영 내에서 제17대 총선과 제18대 총선에서 크게 대비되는 중요한 한 흐름에 주목할 경우 일정부분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전자의 시기에는 선거 관련 법·제도의 개혁과 더불어 여성 진영 내에서 기관간 내지 조직간 네트워크화를 통한 여성의제의 발굴과 개발 및 정치권에 대한 압력행사가 크게 있었던 반면 제18대 총선에서는 이렇다 할 여성 정치네트워크의 구성은 물론 노력도 전개되지 않았으며 그 결과 여성의제 발굴과 개발은 물론 조직화된 정치적 압박행사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겠다. 여성 정치네트워크운동의 부재는 2009년 11월 민선 5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결성된 '2010 지방선거 남녀동수 범여성연대'의 결성 배경에서 절실한 반성으로 잘 드러난다.

이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선거 관련 법·제도적 개선이 여성 정치참여 확대의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선거 관련 법·제도의 방안 마련은 여성의 정치적 역량강화를 통한 정치세력화라는 다층적인 전략의 한 부분을 구성할 따름이라는 것이다. 여성 할당제와 같은 법·제도적 방안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통한 정치에 있어서 성적인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되고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이 함께 마련되지 않으면 해결되기 어려운 정책 이슈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파르자나 바리(Farzana Bari)가 여성이 근대민주주의의 가부장제적 맥락 속에서 여성할당제를 통해 정치권에 진입할 때 국가제도의 성 정치를 개혁시킬 수 없으며 오히려 남성의 관점에서 정치를 하게 된다는 주장은 경청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¹⁷⁾

우리가 여성 정치네트워크 및 생활정치운동에 주목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측면 때문이다.¹⁸⁾ 한국 사회는 산업화와 민주화 및 급속한 진행되는 정보화와 글로벌화를 겪고 있으나 정치영역에 있어서 가부장제적 인식과 조직 및 금권 선거정치문화 그리고 관련 법·제도의 미비와 정당의 역할 및 당내 민주화 미흡 등이 잔존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여성의 정치참여에 커다란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 사회·문화 및 정치 구조상 장애는 전체는 아니더라도 층위를 달리한 여성 정치인 개인 간 또는 개인과 조직 간 또는 조직과 조직 간의 연계 형성, 즉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일정부분 극복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하게 존재한다.

13) 중앙 수준에서 17대 국회를 중심으로 경험적 분석을 한 연구로는 김원홍·이현출·김은경(2007), "여성의원이 국회를 변화시키는가? 17대 국회의원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제6권, 제2호, 27~52쪽을 들 수 있고, 지방 수준에서 경험적 분석을 한 연구로는 엄태석(2010), "여성의 정치참여가 지역 여성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치·정보연구』 제13권, 제4호, 71~91쪽을 참조할 것.
14) 김용철(2007), "지방자치제 하에서 여성 정치참여의 실태와 정책방향." 『한국정책학회보』 제16권, 제4호, 307~328쪽. 엄태석(2010), *ibid.*, 73~5쪽.
15) 국가적 수준과 정당 수준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소개 및 비판에 대해서 Pia Scholastika Kaiser(2001), "Strategic Predictors of Women's Parliamentary Participation: A Comparative Study of Twenty-three Democracies."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at UCLA을 참조할 것.
16) 김형준(2010), "2010 지방선거,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 고찰." 『젠더연구』 제15호, 9~11쪽.

17) Farzana Bari(2005),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Issues and Challenges." (Draft). A paper presented to United Nations Division for the Advancement of Women(DAW), Expert Group Meeting, Enhancing Participation of Women in Development through an Enabling Environment for Achieving Gender Equality and the Advancement of Women, Bangkok, Thailand, 8-11 November 2005-10-29, pp. 6-7.

18) 이하의 여성 정치네트워크에 관한 논의는 서현주(2010), "한·일 여성 정치네트워크 비교고찰을 통한 정치참여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제78권, 제1호, 210~213쪽을 인용하면서 수정·보완하였음을 미리 밝혀 둔다.

네트워크는 자율과 협력을 기본으로 하여 개체와 집단이 유기적 조화를 구축하는 관계망으로서 이를 조직에 적용하면 조직 네트워크는 상호의존으로 구성되는 단체들 간의 연결이며 행위자들이 서로 교류하고 관계를 맺는 사회적 공간을 의미한다.¹⁹⁾ 앞서 지적한 바 있듯이 전통적인 봉건적 가부장제적 요소 등 여성 정치참여 저해요소들이 상존하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성질의 이슈들, 예컨대 정치자금 동원 및 조직적 후원, 지역 활동, 정치학습, 여성 이슈의 정책 의제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여성 정치네트워크는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 달리 말해, 여성 정치네트워크는 여성 개인이 자신 속한 집단의 자원에 접근함으로써 단독으로 확보할 수 없는 소중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또한 그러한 개인은 연결망에 소속된 덕택에 희소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²⁰⁾

구체적으로, 여성 정치네트워크는 첫째, 여성의 정치적 조직화와 집단화를 통해 개인적 분절에서 파생되는 정치활동의 부담 경감 효과, 둘째 폭넓은 대인관계 형성 및 정치교육과 학습의 기회와 공간의 제공 효과, 셋째 개인적 차원이나 분절된 조직에서 실현이 힘든 여성 관련 이슈의 의제화 및 정책화 용이, 넷째 제도권 내 여성 정치인에게는 의정활동 및 지역 활동지원의 배경, 다섯째 자질과 경력을 갖춘 여성들의 의회 진입 및 정치인으로서 경력 지속의 지원²¹⁾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여성 정치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존재한다. 특정 시기에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이슈의 의제화 등을 목표로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네트워크가 하나이고,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상시적인 차원에서 구성되어 생활정치 이슈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여성 정치네트워크가 다른 하나이다.

먼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이슈의 의제화를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구성된 네트워크에 대해 살펴보자. 제17대 총선 당시 한시적으로 구성되어 활동했던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와 '여성정치네트워크' 및 '17대 총선을 위한 여성연대' 그리고 '2010 지방선거 남녀동수 범여성연대'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다.²²⁾ 이 가운데, 특히 2003년 11월 당시 17대 총선을 대비하여 각 정당의 후보공천과정을 개선하고 여성 정치참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구성된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는 각계 인사들이 개인 자격으로 참여해 구성된 조직으로 각 정당의 여성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의 투명성을 검증하는 한편 여성 후보에 대한 공천 요구 및 지지 그리고 당선운동을 전개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

가받는다.²³⁾ 1997년 출범한 '여성정치네트워크'는 1998년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한국여성유권자연맹과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및 한국여성정치연구소 그리고 한국여성정치연맹으로 구성된 것이다. 2003년 출범한 '17대 총선을 위한 여성연대'는 321개 여성단체들이 연대하여 정치개혁과 획기적인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달성을 목적으로 하였다. 한편, 2010년 민선5기 지방선거를 대비해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한국여성정치연맹 등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결성한 '2010 지방선거 남녀동수 범여성연대'는 그동안 지역구 공천 여성 의무할당제를 국회 공직선거법에 포함시키기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과 면담하는 등의 성과를 내었다.

다음으로,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상시적인 차원의 여성 정치네트워크로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등이다.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는 2008년 5월 지방 여성의원들이 개별적으로 가입하여 결성되었다. 동 네트워크는 여성의 정치세력화 및 성숙한 지방의회 발전을 초석을 마련하고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생활 정치를 실천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여성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성과를 홍보하여 여성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기초 역할을 다짐하면서 우수 조례연구 및 조례 제·개정활동과 예·결산 심의 정보 공유 및 행정사무감사 정보 공유 그리고 해외 선진지역 연수와 여성 지방의원간 관계 형성 및 교류 그리고 의정활동 홍보 등의 주요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²⁴⁾

이상에서 살펴본 여성 정치 네트워크들은 다음과 같은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우선, 개인 간 연대를 토대로 형성된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를 제외하고 여성 관련 단체들 간에 이루어진 것이다. 둘째, 상시적으로 활동하는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한시적 성격을 띠어 특정시기 특정이슈를 중심으로 활동하다 해체되었다. 셋째, 조직의 규모라는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지역적 단위라기보다 전국적인 네트워크라고 하겠다. 넷째, 네트워크 구성 행위자들 간의 연계형태가 대체로 특정의 한정된 시기에 공통된 관심사항을 중심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협력적이라고 하겠다. 특히, 우리나라 여성 정치네트워크가 핵심적으로 갖는 상시성의 결핍 및 지역 네트워크 관계의 부재는 그동안 형성된 바 있는 여성 정치네트워크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겠으며, 이는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 사회 내 시민단체나 네트워크를 배태하고 있는 시민사회의 발전과정의 역사적 문화와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다. 한국의 시민단체와 네트워크는 기존의 상하관계, 혹은 중심과 주변, 서울과 지역, 고도의 조직력과 결속력 효율성 등이 잘 발달해 있다. 이는 한국 사회가 역사적으로 갖는 인본주의 전통과 가족주의적 세계관 및 한국전쟁 등의 충격에서 파

19) 지충남(2007), "제외한인 시민사회단체의 네트워크 실태와 발전방향." 『대한정치학회보』 제15권. 제1호, 171~194쪽.
 20) A. Portes(1998), "Social Capital: Its Origins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24, pp. 1~24.
 21) 국회여성위원회(2009), "여성정치인의 경력지속성 향상 방안". 국회여성위원회(정책연구 08-4).
 22) 이들에 대해서는 서현주(2010), "한·일 여성 정치네트워크 비교고찰을 통한 정치참여 확대 방안 연구." 『여성연구』 제78권. 제1호, 210~213쪽을 참조.

23) 좀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남윤인순(2004), "여성의 정치참여운동의 현황과 과제." 『기억과 전망』 여름호, 159-178쪽 참조.
 24) 보다 자세한 활동에 대해서는 <http://www.womenpower.or.kr>을 참조.

생되는 것이다. 그 결과, 한국 사회에서 집단의 형성은 자연적이기보다 인위적이기 쉽다. 따라서 한국에서 집단 내지 네트워크의 지속성은 담보하기 어렵고 상호협력적인 수평적 관계의 형성도 어렵다.²⁵⁾

이와 관련해서 여성 정치네트워크 형성에 있어서 주목하여야 할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생활정치영역에서 양성평등 확대와 여성의 역량강화를 통한 참여 증진 등을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 및 캠페인을 전개하는 여성운동 흐름이다. 생활정치는 지난 몇 년 사이 정체에 빠져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한국 여성운동이 그 활로 모색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는 것이 대전여민회, 충북여세연 등이다. 대전여민회는 최근 세계화와 빈곤 등등과 같은 여성운동 환경의 변화를 직시하고 기존 여성운동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하여 활동방향을 민주주의와 인본주의 운동, 생활과 지역에 기초한 성 평등주의 생활운동 및 지역사회 돌봄과 나눔의 상생공동체를 통한 인권과 평등 및 평화의 대안사회 추구로 정하고 그 활동 영역을 다층화 및 다양화하고 있다.²⁶⁾ 충북여세연도 지방화시대 여성의 참여자치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다양한 교육활동, 특히 차세대 여성지도 양성프로그램과 여성정치학교, 여성유권자 교육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지역수준에서 다양한 수준에서 생활정치운동을 전개한다.²⁷⁾ 이는 주부와 여성이 바로 생활정치의 주체로서 제도권내로 진출하는 것을 생활정치의 활성화로 해석한데서 기인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생활정치와 관련해서 한국의 여성운동단체들이 적극적인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주목한 것이 바로 일본의 '가나가와네트워크운동', '동경생활자네트워크' 등의 생활정치를 기반으로 한 지역 네트워크 운동이다. '가나가와네트워크운동' (NET)은 기존의 생활클럽운동을 모태로 하고 여타 형태의 협동조합운동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 차원의 정치세력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달리 말해, 기존의 정치 및 문화의 존재양식을 비판하고 일상생활공간을 새롭게 설계하는 사회운동으로서 새로운 연대관계의 구축을 통해 정치 혁신을 그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²⁸⁾ 동 조직은 "본래 정치의 목적은 사람들의 경제·사회·문화적인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의 실현"이라는 점을 유념하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현안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각 운동은 전통적인 이데올로기의 지속적인 자기 혁신을 통해 운동 상호간의 자신의 존재가치를 상대화 시킬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둘째 정치가 변혁의 동인을 가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창의력과 행동력을 조직하고, 셋째, 사회운동의 역사적 역할과 개인의 인생의 의미를 통일시킬 수 있는 사회적 조건과 장치의 창출 및 지역자치의 존

재방식을 모색한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정치학교 등의 운영을 통해 전문적이면서 동시에 실용적인 교육과정 제공 및 선거운동도 지원한다.²⁹⁾

한편, '동경생활자네트워크' 역시 지역생활정치운동에서 출발하여 여성을 제도정치권으로 진입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 조직은 동경 내 지역자치단체의 지역현안은 물론 동경 전체의 문제에 대해서 주목하여 동경지역을 '생활의 동네, 생활하기 편한 동네' 로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이 조직은 의원 순환제를 운영하고 의원의 보수는 시민의 자발성에 기초한 자금으로 지급한다. 선거와 관련해서 운동 및 자금은 네트워크 참여 시민들의 자발성에 기초한 자원봉사 및 후원금 모금을 통해 지원된다. 이외에도 이 조직은 생활중심의 소규모 정책제안운동과 수질조사 등의 조사활동 및 소규모 포럼 개최와 예산제안운동 그리고 민관협의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³⁰⁾

이상에서 간단히 살펴본 일본의 생활정치를 모티브로 한 네트워크운동 사례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우선, '가나가와네트워크' 등은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 즉 여성의 제도정치 진출을 주된 의제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지역사회 확산 역시 중요한 의제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치스쿨, 미니포럼 등 다양한 형태의 정치과정을 마련하고 있다. 둘째, 이들은 기존의 생활클럽운동을 모태로 하면서도 여타 형태의 협동조합운동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 차원의 정치세력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이들 네트워크운동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수준에서 상시적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이들은 중앙 차원의 문제의식이나 운동의제를 지역단체가 받아서 진행하는 하향식이 아닌 지역사회 고유의 욕구나 문제의식을 활성화시키는 상향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방금 지적한 바와 같은 일본 내 지역 수준에서의 여성 정치네트워크 운동의 핵심적인 측면들, 즉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 확대를 목표로 하면서도 지역에서의 생활 이슈를 정책 어젠다화 한다는 점, 여타 단체와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점, 지역차원에서 상시적으로 활동을 전개한다는 점 그리고 상향식 문제의식과 운동의제를 통해 운동을 진행한다는 점은 선거 등 특정 시기에 임박해서 한시적으로 중앙 집중적인 방식으로 지방적인 이슈의 정책 어젠다화보다는 제도권 진출을 주된 목표로 삼고 운동을 전개하는 경향이 있는 한국의 여성 정치네트워크 운동의 향후 방향 모색에 있어서 참고해야 할 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지적이 현재와 같은 특정시기에 특정이슈를 중심으로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여성 정치네트워크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한시적인 여성 정치네트워크의 구성 및 활동과 병행해서 지역수준에서 상시적인 네트워크 기반의 여성 정치네트워크 운동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25) 한국과 일본의 생활정치 관점에서의 비교연구로는 이기호(2003), "생활정치의 관점에서 본 한일간 시민운동의 비교연구." 『시민사회와 NGO』 제1호, 173-264쪽을 참조할 것.

26) 대전여민회 활동에 대해서는 <http://www.tjwomen.or.kr>을 참조.

27)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cdwomanpower.or.kr>을 참조.

28) 요코다 카쓰미(2002), "어리석은 나라의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시민: 생활클럽 운동그룹과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의 모델만들기," 나일경 역(서울: 논형), 168-169쪽.

29)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kgnet.gr.net>을 참조.

30)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seikatsusha.net>을 참조.

4. 글을 맺으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정치에 있어서 여성의 정치적 과소대표성은 특히 지난 10년 여 동안 관련 법·제도 개정을 위한 여성운동 등에 힘입은 국회 및 지방의회의 진입으로 다소 완화되었으나, 아직도 가야할 길은 멀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한마디로,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정치적 과소대표성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라는 것이다.

이렇게 여성의 정치적 과소대표성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지속되고 있는 것은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남성 우위의 가부장제적 사회·정치문화 전통과 같은 구조적 요인들이 급속한 산업화와 근대화 및 민주화와 글로벌화 등의 사회·정치적 침투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지속되고 있는데 기인한 것이 크다고 본다. 이와 같이 여성의 정치적 과소대표성을 지속 생산시키는 구조는 단기간에 쉽게 변화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성계의 운동은 지속되어 다양한 성 평등 및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노력을 상당부분 이루어왔고 향후에도 계속되어 긍정적인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본다.

이 글에서 필자는 그러한 여성계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면서 동시에 여성계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로서 생활정치를 매개로 여성 정치네트워크의 구축과 활성화를 지적하였다. 잘 알다시피, 한 사회에서 성 평등과 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필수요건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여성의 경제 및 재정적 자원에의 평등한 접근권과 통제력의 확보이다. 평등한 접근권과 통제력의 확보는 여성의 정치참여의 확대를 전제로 한다.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여성은 우리 사회·문화에서 갖는 구조적 불리함과 그것에서 파생된 남성과 달리 여성이 개인으로서 갖는 경제적, 재정적 약점 등을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여성이 이러한 불리함과 약점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법·제도적 수준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갖지 못하는 다양한 자원의 상호 교환을 통한 공유를 가능케 하여 시너지효과를 산출해 줄 수 있는 네트워크의 구축과 활용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필자는 다른 기회에 제18대 총선에서 여성계가 거둔 다소 실망스러운 결과를 제17대 총선시 여성운동진영에서의 여성 정치네트워크 구축과 활동의 부재로 연계시킨 바 있다. 앞서 본문에서도 강조하여 지적한 바 있지만 특정 선거시기에 형성되는 한시적 여성 정치네트워크도 필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그러한 여성 정치네트워크의 구성요소가 될 지역수준에서의 상시적 여성 정치네트워크의 구축과 활성화 역시 대단히 중요하다. 최근 여성운동계에서 전개되고 있는 생활정치를 매개로 '새판짜기' 노력 역시 네트워크라는 부분을 간과해서 안 된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국회여성위원회(2009), “여성정치인의 경력지속성 향상 방안”. 국회여성위원회(정책연구 08-4).
- 김연진(2008), “여성정치인의 의회진출을 통한 대의성의 구성과 정치변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용철(2007), “지방자치제 하에서 여성 정치참여의 실태와 정책방향.” 『한국정책학회보』 제16권. 제4호.
- 김원홍·김혜경 김은경(2001), 『해방후 한국여성의 정치참여 현황과 향후 과제』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김원홍·윤덕경·김은경·김은수(2007), “기초의회 선거제도의 변화가 여성의 의회진출에 미친 효과성에 관한 연구: 2006년 5.31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여성연구』 제73권. 제2호.
- 김원홍·이현출·김은경(2007), “여성의원이 국회를 변화시키는가? 17대 국회의원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제6권. 제2호.
- 김형준(2010), “2010 지방선거,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 고찰.” 『젠더연구』 제15호.
- 남윤인순(2004), “여성의 정치참여운동의 현황과 과제.” 『기억과 전망』 여름호.
- 대한민국헌정회(1992), 『대한민국지방의회총람』 서울: 대한민국헌정회.
- 서현주(2010), “한·일 여성 정치네트워크 비교고찰을 통한 정치참여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제78권. 제1호.
- 엄길임(2007), “지방자치시대의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엄태석(2009), “충남 여성 정치참여 제약요인의 해결방안과 정치참여 의식 제고.” 충남여성포럼 발표논문.
- 엄태석(2010), “여성의 정치참여가 지역 여성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치·정보연구』 제13권. 제4호.
- 요코다 카쓰미(2002), 『어리석은 나라의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시민: 생활클럽 운동그룹과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의 모델만들기』 나일경 역. 서울: 논형.
- 이기호(2003), “생활정치의 관점에서 본 한일간 시민운동의 비교연구.” 『시민사회와 NGO』 제1호.
- 이문숙(2008), “프랑스의 여성정치참여: <동수법>의 효과인가?” 『한국프랑스학논집』 제61집.

- 조현옥(2009), “여성의 참여확대를 위한 2010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개원 10주년 기념 학술회의 발표논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89), 『대한민국정당사』 제1집(1945~1972) 서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00),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총람』서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충남(2007), “재외한인 시민사회단체의 네트워크 실태와 발전방향.” 『대한정치학회보』 제15권. 제1호.
- Bari, Farzana(2005),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Issues and Challenges.” (Draft). A paper presented to United Nations Division for the Advancement of Women(DAW), Expert Group Meeting, Enhancing Participation of Women in Development through an Enabling Environment for Achieving Gender Equality and the Advancement of Women, Bangkok, Thailand, 8-11 November 2005-10-29.
- Kaiser, Pia Scholastika(2001), “Strategic Predictors of Women’s Parliamentary Participation: A Comparative Study of Twenty-three Democracies.”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at UCLA.
- Grey, Sandra(2001), “Does Size Matter? Critical Mass and Women MPs in New Zealand House of Representative”. Paper for the 51st Political Studies Association Conference 10-12 April 2001, Manchester, United Kingdom.
- Portes A.(1998), “Social Capital: Its Origins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24.
- UNDP(2009), Human Development Report 2009.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World Economic Forum(2010).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0. Geneva: World Economic Forum.